아산시 보건소장 개방형직위 임용시험 시행계획 재공고(2차)

아산시 인사위원회 제2026-76호 공고 및 아산시 인사위원회 제2026-82호 공고에 따른 응시자가 없어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재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6년 11월 20일

아산시 인사위원회 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주요업무

임용직위	임용직급	주요업무	인원	기간
보건소장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일반임기제 (개방형 4호)	○「지역보건법」에 따른 소관업무 수행 ○ 보건행정 및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시행 ○감염병 예방 관리 및 국가예방접종 ○정신건강 및 모자보건·치매 관리 ○방문보건 및 의료취약계층 지원 등	1명	채용일 ~2년

2. 근거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 4(개방형직위)

❍ 「지역보건법」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지방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 직위 운영지침」

❍ 「아산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등

3. 응시자격

❍ **공통요건 및 선발 직무분야 응시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역·성별: 제한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연령: 만 18세 이상인 자(대한민국 국적자(외국인이 아닌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 **공직선거법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①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30조부터 제234조까지, 제237조부터 제255조까지, 제256 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죄(당내경선과 관련한 죄는 제외한다)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간,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의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

1.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

▶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임용하거나 채용할 수 없으며, 재직 중인 경우에는 해직하여야 한다.

1.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
2. 징집·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3.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 **정치자금법 제57조(정치자금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집행을 받

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간,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공직선거법」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의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치료감호의 선고와 자격정지)**

피치료감호자는 그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정지된다.

1. 공무원이 될 자격
2.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3.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 업무에 관한 자격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선발 직무분야 응시요건

- 아래 **각 필수요건을 충족하면서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

❶ 의사면허 소지자

구분			요건 (적용기준일: 면접시험 시험예정일)
필수요건			▶ **「의료법」에 따른 의사 면허소지자**
자격요건	학력기준	석사 학위 이하 인자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박사 학위 소지자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자격증 기준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서 「의료법」에 의한 의사면허 취득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경력기준	공무원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4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민간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 예정직위에 상응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 분야 경력 범위 >			
의무·약무·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간호·보건진료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			

❷ 치과의사 · 한의사 · 간호사 · 조산사 · 약사 면허 소지자

구분			요건 (적용기준일: 면접시험 시험예정일)
필수요건			▶ **「의료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면허소지자** ▶ **「간호법」 제12조에 따른 간호사 면허소지자** ▶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 면허소지자**
자격요건	자격증 기준		▶ 관련분야에서 근무·연구 경력이 4년 이상이면서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약사 면허를 취득한 이후의 근무·연구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경력기준	민간	▶ 관련분야에서 근무·연구 경력이 2년 이상이면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보건소장 직위에 상응하는 직위의 근무 경력이 있는 자
< 관련 분야 경력 범위 >			
의무·약무·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간호·보건진료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			

❸ 보건소에서 실제로 보건 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공무원

구분			요건 (적용기준일: 면접시험 시험예정일)
필수요건			▶ **보건소에서 실제로 보건 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공무원**
자격요건	경력기준	공무원	▶관련분야에서 근무 경력이 1년 이상이면서 4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관련분야에서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이면서 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민간	▶관련분야에서 근무·연구 경력이 2년 이상이면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보건소장 직위에 상응하는 직위의 근무 경력이 있는 자
< 관련 분야 경력 범위 >			
의무·약무·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간호·보건진료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			
< 보건소에서 실제로 보건 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공무원 범위 >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에 따른 보건 등 직렬의 공무원으로 한정			

경력증명 관련 참고사항

○ **경력 계산 시 공무원경력과 민간경력 합산 불가**

○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불명확할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경력증명서 필수 기재사항 : 근무기간(주당 근무시간 포함), 직위(급), 담당업무

***근무기간 계산방법**

· 종일 근무(주40시간) 시: 경력 전부 인정

· 종일 근무가 아닐 경우: 근무시가에 비례하여 근무기간 산출

ex) 2년간 주20시간 경력 ⇒ 1년으로 인정

· 비상근, 프리랜서 등: 주당 근무시간 입증 자료 제출

○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중증장애인의 경우 5년, 시간선택제임기제·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한시임기제공무원 및 2명 이상의 미성년자녀가 있는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경력사항은 서류증명이 가능해야 함

○ **우대요건 판단 기준일: 원서접수 마감일**

<공통>

▪ '필수자격요건' 및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 경력기준, 학위기준 중 해당되는 사항을 선택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및 학위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함

▪ **우대요건, 가산점**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경력의 범위>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건에 한함**(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수 있음에 유의)**

* 담당업무는 관련 직무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중증장애인의 경우 5년, **시간선택제임기제**·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한시임기제공무원 및 2명 이상의 미성년자녀가 있는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기관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경력을 입증할 **다른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해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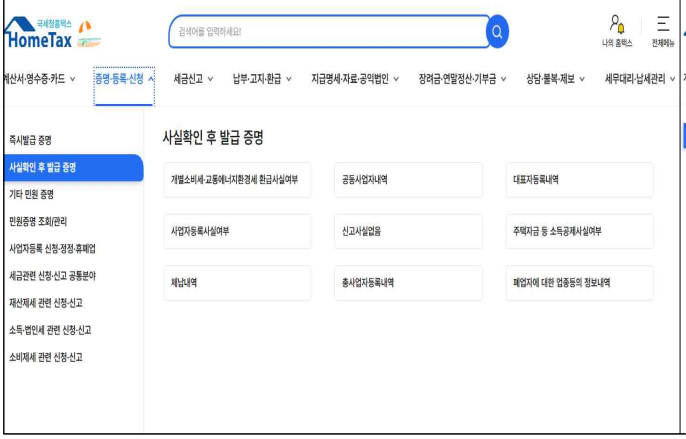
* 보완서류 중 '폐업사실증명서',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소득금액증명서'는 필수 제출

* ①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 자료(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② 폐업사실증명서, ③ 4대보험 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④ 소득금액증명서 → ①, ②, ③, ④ 모두 제출해야 함

참고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hometa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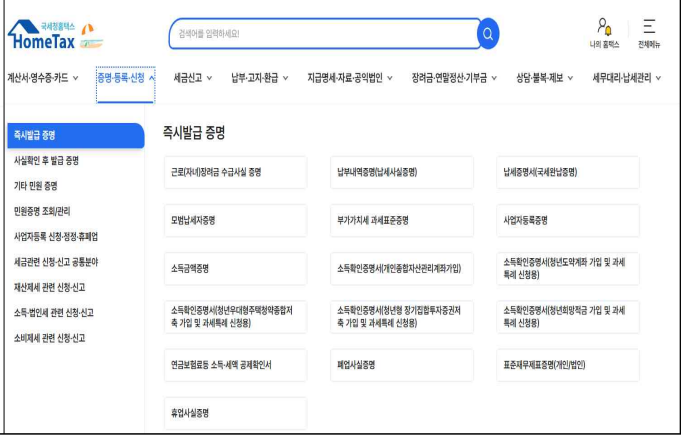
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증명·등록·신청 → 사실확인 후 발급·증명 → 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증명·등록·신청 → 즉시발급 증명 → 근로자소득용 발급(발급기한 설정) → 폐업회사 사업자번호 확인 →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4. 임용조건

❍ 임용 예정일 : 2027년 1월 예정이나,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임용신분

- 경력직공무원으로서 전보·승진·전직 등의 요건을 갖춘 사람은 각 요건별 임용방법에 의하여 경력직 공무원으로 임용
- 민간인의 경우에는 임용약정을 통해 해당 직위에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하고, 임용기간동안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서의 신분 유지

❍ 임용기간: 임용일로부터 2년

※ 근무 여건 및 실적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연장 검토 가능**

❍ 보수

- 경력직공무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 임기제공무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규임용 시 연봉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 예정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단위: 천원)

임용예정 직급	상한액	하한액
개방형 4호	-	70,490

※ 연봉 외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하며, 수당은
※ 시간선택제임기제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연봉 외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하며, 수당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음
※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 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시 가입가능 (단,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공무원연금**법」이나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함(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1항)

❍ 복무: 일반직 공무원에 준함

5. 시험방법

가. 1차 시험(서류) : 형식요건 심사

❍ **임용예정 직위에 대해 정하고 있는 응시요건 적합 여부를 심사하여 합격 또는 불합격을 판단**

❍ 응시인원이 예정인원의 8배수 이상인 경우 서류전형 합격자를 7배수 이상으로 결정 가능

❍ 제출서류

< 제출서류 >

○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
○ 응시원서 1부
○ 이력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최종학력 증명서 1부
○ 관련분야 경력(재직)증명서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1부
○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 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1부
○ 기타 이력서에 등재된 내용 증빙자료 (연구논문의 경우 요약서 첨부)

❍ **자격증 보유 필수 분야는 자격증 취득(최초 취득일) 이후 경력만 산정**

❍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보완해야 함

❍ **우대요건**

- 경력증명서에 의해 당해 분야 경력으로 증명 가능한 것에 한하여 인정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
- 공공기관에서 관련 분야 위원회, 자문단, 기자단, 서포터즈 등으로 활동한 경력 제외

나. 2차 시험(면접) : 적격성 심사

❍ 면접대상: **1차 시험(서류) 합격자**

❍ 선발시험위원회에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요건을 검증하여 적격자 2~3인의 임용후보자를 인사위원회에 통보

< 평정요소 >

① 전문가적 능력 ② 전략적 리더십 ③ 변화관리 능력 ④ 조직관리 능력 ⑤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6. 시험일정

가.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6. 12. 1.(화) ~ 12. 7.(월)

- 휴일제외, 근무시간 내 접수(중식시간(12:00~13:00) 제외)

❍ 접수장소: 아산시청 총무과 인사팀(본관 4층)

❍ 접수방법: 등기우편 접수 및 방문접수

< 등기우편 접수 시 유의사항 >

- 우편접수는 접수기간 마지막일까지의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함
- 주소 (우31512)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456(온천동) 아산시청 4층 총무과 인사팀
- 우편접수자의 경우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로 통보 예정이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
- **응시수수료는 우체국 방문 '통상환증서'**를 발급 받아 제출서류와 동봉 제출

※ 우편접수된 서류 미비 시 추가로 서류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마감일 18:00까지 보완 제출된 것에 한하여 인정 함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소인분(빠른 등기)까지 유효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응시번호: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전까지 휴대폰 SMS로 통보

나. 1차 시험(서류) 합격자 발표

❍ 2026. 12. 14.(월)「아산시 홈페이지」 공고

다. 2차시험(면접)(추후 별도 공고)

❍ 일시 및 장소는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공고 참고

라. 면접합격자 발표(추후 별도 공고)

❍ 아산시 시 홈페이지 게시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은 아산시청 홈페이지에 게재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7. 응시원서 서류 및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서류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등)는 반드시 공증번역본을 첨부하여야합니다.
❖ 모든 증빙서류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단, 어학능력은 2년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제출서류 중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 사용
❖ 제출서류 접수 시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제출하며, 스테플러 사용 금지
❖ 모든 제출자료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원본지참 후 확인된 사항은 사본 제출 가능

구 분	내 용	비고
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 (별지 제1호 서식)	○ 제출서류 확인 및 **목록표 순으로 정렬 후 제출**	
2. 응시원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 **응시 수수료 납부 후 제출** *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는 사용 불가 **※ 수입증지 수수료: 10,000원** - **(방문접수)** 아산시 수입증지 수수료 납부(아산시청 민원과) - **(우편접수)** 우편통상환 구입・동봉 ○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증빙서류 필수 제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 우편통상환 구입은 금융업무이므로 우체국 마감시간 유의 ★ 우편통상환의 받는 사람을 빈 칸으로 두어야 하며, 뒷면 기재 절대 금지	필수
3. 이력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 **증명서류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기재** **※ 이력서 상의 경력과 자격은 기재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함**	필수
4.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 A4용지 2장 이내	필수
5.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 A4용지 3장 이내	필수
6. 최종 학력 졸업(재학) 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 고졸자는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제출 **○ 박사 또는 석사학위 보유자는 모든 학위증명서 제출**	필수
6-1.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별지 제10호 서식)	○ 관련분야 학위를 요건으로 하는 시험만 해당 (추가필수자격요건 또는 우대요건이 있는 경우에 한함)	해당자만 제출
6-2. 논문요약서 (별지 제11호 서식)	○ 석사 학위 이상 해당자에 한함	해당자만 제출
7. 경력(재직) 증명서 (별지 제8호 서식)	**○ 상근/비상근 여부, 비상근 시 1일, 1주당 근무시간 반드시 기재**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필수

구 분	내 용	비고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 등 입증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함. 미제출시 불인정 **(ex. 근로계약서 등)** -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 발생시 사업자등록증, 폐업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증빙자료 제출 ○ 근무기간(연월일까지 기재), 담당업무내용, 발급기관(회사) 직인, 발급담당자 날인 및 전화번호 등을 명시하여야 함 **○ 담당업무내용에는 채용 분야와의 업무연계성이 잘 나타나도록 상세히 작성**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근무기간, 직위(급), 담당업무 기재) **○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 미기재 및 모호하거나 불분명하여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분야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응시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를 첨부** ○ 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본 첨부	
8.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s.or.kr)에서 발급 ○ 미해당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또는 가입내역 확인서)**로 제출 가능 ○ 경력과 관련된 사업장(회사)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발급·제출	필수
9. 응시자격과 관련된 자격(면허)증 사본 각 1부	○ 발급년월일 및 자격증 번호가 선명하게 나온 사본(원본 지참) ○ 갱신 또는 재발급한 사실이 있을 경우 갱신 또는 재발급한 사본 ○ 유효기간이 명기되어 있는 구 자격증 → 최신 자격증 갱신 사본	필수
10.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제6호 서식)	○ 별지 제7호 서식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사전 동의한 경우는 제출 불필요	필수
11.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 (별지 제7호 서식)	○ 임기제공무원 채용에 필요한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서	필수
12.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별지 제9호 서식)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9조에 따라 비위면직자 등은 공공기관에 취업이 제한되어 지원자 본인의 사전 확인 절차임	필수
13. 기타 증빙서류	○ 관련분야 또는 정보화 자격증 ○ 어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2년 이내의 것만 인정) ○ 관련분야 연구실적(논문, 저서 등) - 연구논문 등 분량이 많을 경우 경우 1매 이내의 요약서 첨부 ○ 관련분야 수상실적(기관명, 수상자(단체 불인정), 공적 등 기재된 것만 인정)	해당자만 제출

나. 유의사항

- ❍ 아산시인사위원회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되는 임용시험에는 중복하여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 ❍ 응시희망자는 임용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셔야 하며, 접수마감일 18:00이후에는 원서접수가 불가합니다.(등기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
- ❍ 담당업무가 기재된 경력증명 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원서접수는 가능할 수 있으나, 심사과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시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83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영에 의한 시험, 그 밖의 지방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 ❍ 지방공무원법 제43조의3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 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그 내용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 까지 최초 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 응시자가 없거나 내부 응시자만 있는 경우, 적격자가 없는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또는 연장공고 할 수 있습니다.

8. 기타 참고사항

-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3조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계획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관련 : 총무과 인사팀 ☏ 041-540-2226
- 직무관련 :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 ☏ 041-537-3402